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오피스텔 분양광고 [세종 6-3생활권 H3블록, 빗돌마을 6단지]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세종 6-3생활권 H3블록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세종시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sejongkhapt.com) 운영 및 방문예약제를 통한 적정 인원의 내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약자 본인 외 동반 1인까지 입장 가능합니다.(정당 계약 체결일 동일 적용)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분양사무실)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분양사무실) 관람 및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홈페이지(http://www.sejongkhapt.com)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방문예약 접수방식 변경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시 별도 통보 예정)
     - 당첨자 발표 이후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분양사무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견본주택(분양사무실) 내방시 : 당첨자 1인만 내방 가능(동행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시 포함)
  2. **견본주택(분양사무실)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분양사무실) 입장 전 마스크 및 비닐장갑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분양사무실)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분양사무실) 관람, 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오피스텔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44-862-1567)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방 가능 일자 및 예약방법(※ 사전예약은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 H3블록 통합운영으로 별도 예약 인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 분	사전 예약 일시	견본주택(분양사무실) 내방 가능 일시
일 정	3월 11일(목) ~ 3월 23일(화)	3월 12일(금) ~ 3월 23일(화)
방 법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	시간대별 40명 이하 내방 예약 가능
내 용	■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만 가능하며 유선상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 시간대별 40명 이하 예약만 가능합니다.(동반 1인까지 최대 80명 이하 입장가능) ■ 조기에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정책 등에 따라 기존 예약을 하셨더라도 취소 및 내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세종시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시간대별 내방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반 1인까지 최대 80명 이하 입장가능) ■ 견본주택(분양사무실) 관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시간 경과 후 내방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1.03.12)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3.11,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세종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03.11, 광고일과 다름) 현재 세종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금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 블록 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다른 블록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오나 대출제한 등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됨.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2호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청 [2021-건축과-분양신고-2호(2021.03.11)]로 분양신고
- 분양사업자 : 금호산업(주), 신동아건설(주), ㈜에이치엠지파트너스 / 시공사 : 신동아건설(주) / 분양대행사 : ㈜프런티어마루
- 분양대금 관리자 : 아시아신탁주식회사 /
  분양대금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하지 않음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H3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 대지면적 : 사업부지 30,898.0000㎡(오피스텔 : 2,044.7563㎡) – 건축물 연면적 : 114,168.0983㎡(오피스텔 : 7,555.3738㎡)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4호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주차대수 : 92대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 확보 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Vii-0.216g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24년 01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 건축물의 층별 용도

구 분	용도
지하 1층 ~ 지하 2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지상 1층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지상 2층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지상 3~6층	오피스텔, 부대시설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 (오피스텔)

타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23OT	74	23.2894	21.0711	44.3605	42.5190	86.8795	23.5595
35OT	1	35.8981	32.9241	68.8222	65.5386	134.3608	36.3144
20OT	11	20.6991	20.0079	40.7070	37.7900	78.4970	20.9391
34OT	1	34.3080	31.4980	65.8060	62.6356	128.4416	34.7059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동호별	층구분	공급호실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	2회	3회	4회	입주시
									2021.10.11	2022.05.10	2022.12.12	2023.07.10	
23OT	607동 1~16호 608동 1~10호	3층	26	60,902,206	83,816,177	8,381,617	153,100,000	15,310,000	15,310,000	15,310,000	15,310,000	15,310,000	76,550,000
		4층	26	60,902,206	89,088,904	8,908,890	158,900,000	15,890,000	15,890,000	15,890,000	15,890,000	15,890,000	79,450,000
	607동 1~6호 607동 9~16호 608동 1~5호 608동 8~10호	5층	22	60,902,206	89,088,904	8,908,890	158,900,000	15,890,000	15,890,000	15,890,000	15,890,000	15,890,000	79,450,000
35OT	608동 6호	5층	1	93,874,109	97,387,174	9,738,717	201,000,000	20,100,000	20,100,000	20,100,000	20,100,000	20,100,000	100,500,000
20OT	607동 1,3,5,9,13,15호 608동 2,4,7,9호	6층	10	54,128,372	89,156,026	8,915,602	152,200,000	15,220,000	15,220,000	15,220,000	15,220,000	15,220,000	76,100,000
	607동 7호		1	54,128,372	85,519,662	8,551,966	148,200,000	14,820,000	14,820,000	14,820,000	14,820,000	14,820,000	74,100,000
34OT	607동 7호	5층	1	89,716,075	93,076,296	9,307,629	192,100,000	19,210,000	19,210,000	19,210,000	19,210,000	19,210,000	96,050,000

■ 거주자 우선 분양

타입	공급호실(수)	공급대상(배정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세종시)	일반공급(기타지역)	
23OT	74	5	69	※ 주민등록등본 상 세종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35OT	1	1	–	
20OT	11	1	10	
34OT	1	1	–	
계	87	8	79	

1.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 : 오피스텔 8실(23OT : 5실, 35OT : 1실, 20OT : 1실, 34OT : 1실)
2.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2017.8.3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위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 호실은 본 건축물 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분양공고일 기준)를 우선으로 하여 모집합니다.
3. 거주자 우선분양 대상인 오피스텔(분양분이 100실 이상인 경우 : 10%이상 20%이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경우 : 10%이하) 및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분양분의 10%이하)은 모집공고일 현재 그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4. 거주자 우선분양을 신청한 자 중 분양받을 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분양신청을 한 자에 포함됩니다.
5. 총 공급호실의 10% 이내에서 사업주체가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비율을 결정하여 배정하였으며 1호실 공급 타입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우선배정 하였습니다.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제1항에 따른 거주자 우선분양은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7. 본 업무시설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업무시설로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시행령 제9조2 규정 등에 따라 분양분의 10%이하를 거주자(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 포함)에게 우선 분양합니다(단, 1인당 1실 기준) 단,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세종시 거주지역 당첨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검토 후 세종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사항

1. 상기 총 분양금액은 면적,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상기 분양 금액에는 각 호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오피스텔 23OT 타입의 경우 창호의 위치 등에 따라(A-1, A-2, A-3, A-4) 4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전에 반드시 견본주택(분양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기 바랍니다.
4. 오피스텔 20OT, 34OT, 35OT 타입의 경우 전면 테라스가 존재하오니 청약신청 및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5.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7. 상기 호당 계약 면적에는 지하 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위치 지정이나 구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8. 소유권 이전등기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분양자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하며, 인 · 허가 조건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9. 중도금은 상기 지정일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점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은 은행 영업일기준으로 함)
10.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11.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부분, ELEV홀, 계단실 등)은 전체 공용으로 하고, 해당 용도별 시설이 층별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공용 면적은 층별 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점포(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12.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13. 호실별 분양가격은 위치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공용면적 배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건축물의 현장 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분양사업자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5. 청약 신청시 세부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II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 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1.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동법시행령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10%이하의 범위를 세종시 거주자에 우선 공급합니다.(세종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
2. 단,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세종시 거주지역 당첨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검토 후 세종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사실이 취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최초 분양광고일(2021.03.12.)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법인
4.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 블록 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다른 블록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오나 대출제한 등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6.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7.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일시	당첨자 발표	계약일시	당첨자선정 및 동 · 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1.03.17.(수) (08:00 ~ 17:30)	2021.03.22.(월) 16:00 이후	2021.03.24.(수) (10:00~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군,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리첸시아 파밀리에 견본주택(분양사무실) (세종시 대평동 264-1) ☎ 044-862-1567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금 납부 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모든 타입 공통	₩3,000,000원 (일금 삼백만원정)	• 청약 신청 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 창구 접수시 구비서류(우리은행 전 지점)

구분		구 비 서 류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청약신청서(우리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 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 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우리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1.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후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3.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1. 견본주택(분양사무실)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와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03.1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분양 합니다.
8.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배치구조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9.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법인 명의로 계약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1. 추첨 : 당첨자 및 호실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동 · 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2.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1.03.22.(월)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동 · 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타입 · 동 ·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 신청금 환불 방법

구 분	환 불 방 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1.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III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1.03.24.(수)	10:00~16:00	당사 견본주택(분양사무실)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1.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우리은행	1006-101-540882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입금 시 동,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607동 301호" 당첨자 홍길동 → 6070301 홍길동)

1.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시	•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 계약용),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 계약용)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표자 신분증 지참)
제 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 계약용),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1.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2.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귀속됩니다.
3.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청약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4.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 체결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6.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음.
7.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 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8.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실 구획(호수 및 면적 조정), 분양 가격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9. 보존 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점지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10. 소유권이전 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료하셔야 합니다.
11.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분양사무실)에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12. 계약자는 분양 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13.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15. 기타 계약 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1.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고지 예정
2. 대출금액 : 분양금액의 최대 40% 이자후불제 적용(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분양가격의 40% 범위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중복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일의 최초일 전일까지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8. 분양사업자는 중도금 대출 알선만 할 뿐 중도금 대출 실행으로 인한 신용등급 변동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고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1.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 외국인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납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사전방문

1.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10의 2」에 따라 입주지정 개시일 전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준공 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24년 01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1.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여건

1.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분양 홍보물(CG 등)의 사업부지 외의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공원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은 형태, 층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여건

1.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취소 · 변경 · 축소 · 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해당 개발주체에 문의 확인 바랍니다.
2.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 및 공사 진척사항에 따라 주변의 "도로, 공원등"의 개설 시기가 분양자료(모형,CG등)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바랍니다.
3.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단지의 인근 문화공원이 조성 예정(2021년 12월 공원 조성계획안 확정 예정)이며 공원 조성은 택지조성 사업자 공사 범위로 시설계획인가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공원, 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옹벽 또는 법면 녹지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당 아파트 인근 유치원(유6-7), 초등학교(초6-5)와 중학교(중6-3), 고등학교(6-4)는 2024년 1월 개교예정이나 부득이한 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니 입주전 반드시 세종시교육청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학교 개교 관련 안내사항
   - (전 · 입학 관련) 전 · 입학, 학급편성, 학교운영 등 관련 안내사항은 세종시교육청 전입학 원스톱 지원센터(☎ 044-320-2161~3)로 문의
   - (학교 임시배치) 6-3생활권 內 초등학교(초6-5) 및 중학교(중6-3) 설립계획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확정되는 바, 확정 개교일이 부득이 입주개시일과 맞지 않을 경우 인근 생활권의 지정된 초 · 중학교로 임시배치될 수 있음
   - (통학구역 확정)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청에서 개교 전에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 고시됨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향후 개교 예정인 단지 인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접 동에 소음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8.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에는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으며 그로 인해 보행자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사업대지 안쪽에 설치되어 대지경계가 조정되거나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시 대지면적이 축소 될 수도 있으며 별도의 금액의 정산은 없습니다.
9. 당사업지 단지 출입구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접해 있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 가감속차선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미반영 되어 사업승인을 완료되었으므로 추가로 요구 할 수 없습니다.
10. 주출입구는 출입구와 나란하게 회전교차로가 계획되며, 그로 인해 교통의 흐름에 간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1. 단지 주출입구에는 회전교차로 설치되며 외부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통과차량에 교통의 흐름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부출입구에는 학교 출입구가 설치되어 좌회전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 흐름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BRT도로에서 607동 인근, 문화공원에서 606동 인근에 공개공지가 설치됩니다. 공개공지는 외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지로 입주민들은 외부인 출입을 막는 펜스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인들의 출입으로 인해 인근 동은 프라이버시와 소음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개공지의 디자인 계획(식재, 레벨, 시설물 등) 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5. 당사업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의 주상복합 건물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 상부 주동 입주민은 프라이버시,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당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동선이 지정되어 있고 공공보행동선을 중심으로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인근 동 입주민은 소음 및 프라이버시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BRT변 근린생활시설(상가) 아케이드와 BRT변 사이에는 지구단위계획상 테라스설치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1층 상가가 테라스를 이용할 경우 소음 및 통행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

1.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4. 당 아파트는 세종시 공동주택 단지명과 동번호 부여 원칙에 따라 설치되며, 입주시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6.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7.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지붕형태는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구조는 콘크리트 벽식(근린생활시설은 기둥식)으로 시공됩니다.
9. 냉난방방식은 지역열원을 사용하는 지역냉방, 지역난방이 적용됩니다.
10.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11.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 · 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놀이시설물, 조경시설물 등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14.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오피스텔 외부 마감은 점토벽돌, 수성페인트, 금속재, 석재 마감이 혼재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16.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단지 BRT도로 주변 교통량이 많아 인접동은 소음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7조3항의 의거 일반상업지역으로 소음기준 법적의무 충족 제외됨)
18. 당사업지는 주상복합 건물로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이용객 주차로 인해 단지 주출입구가 혼잡할 수 있습니다.
19. 비주거(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오피스텔 인근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와 분리 구획 되어 있어 양방향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20.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지하 2층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 1, 3층은 아파트용 지하주차장으로 오피스텔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21. 지하2층은 택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높이 2.9m로 계획되어 있으며 자동차가 주차되는 주차면은 높이가 낮을 수 있습니다.
22. 아파트 602동은 디자인 타워동으로 특화디자인을 반영하여 유리 커튼월로 디자인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빛 반사가 일어나 눈부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3. 단지 인근 문화공원(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이 설치되며, 입주민 등의 모임과 활동으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4. BRT변과 북동측도로의 보도와 나란하게 전면공지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통행,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오피스텔내 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 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내부 시설물(가구 및 집기류)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27. 오피스텔은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오피스텔이 같은 동일 건물로 계획되어 있어 서로 동선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동일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어 근생 이용객이 혼잡 시 주차면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9. 오피스텔 4층 후면에는 근생용 탈취기가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 지하주차장 환기탑(DA) 및 채광창, 쓰레기 집하시설인 클린넷(지상1층)과 재활용품 보관소(지하 2층), 자전거보관대(지상,지하층)는 본공사 과정에서 일부 사양, 디자인, 수량, 위치는 조정될 수도 있으며, 일부동의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조망, 냄새 및 소음 등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 지하주차장 옥외계단실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 지하 · 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3.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4.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점검 등)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5.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옥외 운동시설, 파고라, 휴게의자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음식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6.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 · 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7.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8.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39. 저층 세대는 지상 소방차 이동동선,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40.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 ·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42.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에 CCTV카메라가 설치됩니다.
44.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45.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 · 출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됩니다.
46. 소방차 정차 및 활동공간(세종시 소방차 정차공간 12x6m, 소방차 활동공간 15x11m 필요함),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잔디외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7. 각 동 지하2층에는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8. 본 오피스텔은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로 주민공동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각 동 출입구 경사로, 단지외부 엘리베이터 등이 계획됩니다.
49. 오피스텔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발전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배치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1. 근린생활시설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2.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결로 방지를 위해 제습기가 설치되며,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53.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54. 단지 내 제연방식은 승강로를 이용하는 승강로 가압방식이 적용됩니다. (엘리베이터 홀에는 별도 스모크타워가 설치되지 않음.)
55. 지하에는 기계실/전기실이 설치되며,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6. 오피스텔 동 지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용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어 가동시 비산, 소음 등의 발생할 수 있습니다.
57.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DA)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하니 인접세대는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58. 지상2층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는 방향(한방향)으로 운행되므로 이용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59. 단지내 각 동 지하주차장 급, 배기구(DA)가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60. 오피스텔용 난방열량계, 냉방, 급수, 급탕 계량기는 엘리베이터홀 PD 내부에 설치됩니다.
61.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62. 단지내 전기공급용 개폐기(PAD S/W)가 설치 될 수 있으므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63.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607동) 옥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본공사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4.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전파상태에 따라 옥상 및 지하주차장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치 위치는 지역전파관리소에 의해 정해지며, 이동통신 중계장치의 설치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업무영역이며, 시공사와 관련이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65.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66. 급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 발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및 매연, 소음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수 있습니다.
67.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냄새 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8. 4층 지붕에 근린생활시설용 탈취기가 설치되며, 냄새 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9. 측세대의 경우 하부 기둥의 위치 및 단열재로 인해 창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여건

1. 오피스텔 창호는 단창(PW)이 설치되어 입주민의 생활방식에 따라 창문에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환기를 자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복주택에 설치된 창호, 현관문은 본공사비 입찰 결과에 의해 하드웨어, 프레임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3. 주동 장애인승강기(엘리베이터) 샤프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에 따라 바닥면적(공급면적)에 제외되어 산정되었습니다.
4. 오피스텔의 개별실은 플라스틱 창호로 설치되며, PL창호의 외부 색상은 견본주택과 설치된 샘플과 색상은 동일하나 성형 형태에 따른 질감의 차이(외부 굴곡이 져 있음)가 있습니다.
5.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의 형태는 가설건축물 피난을 위해 열리는 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실제 본공사에서는 달라지므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같은 전용면적의 오피스텔이라도 층수, 동수, 형태, 여건에 따라 구조, 베이스, 주방하부장길이, 드레스룸 크기, 발코니면적 등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3층 하부에는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내부 벽체의 임의적인 구조변경, 확장은 불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주민이 져야 합니다.
9. 복도에는 소방을 위한 배연창이 설치되며 오피스텔 실의 현관문은 갑종방화문(FSD)가 아닌 철제문(SD)이 설치됩니다.
10. 최상층실 테라스 바닥 마감은 무근콘크리트로 설치되며 테라스 우수는 인근 우수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오피스텔 5층 일부, 6층 실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으며 다른 타입의 입주민은 전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테라스가 있는 타입의 테라스 경계는 투시형난간이 설치되므로 소음,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테라스 세대는 화재 등의 비상시나 관리를 위해 필요시 다른 입주민과 관리인원에게 개방될 수 있습니다.
14. 각 타입별 기준층 층고는 동일하나 층수에 따라 다락과 거실 높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5.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17. 창호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 · 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8. 같은 전용면적의 타입이라도 층수에 따른 창호의 위치 및 형태가 다르고 그로 인해 조망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0. 외부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단위세대 내에는 배관에 의한 천정고의 차이로 인해 단차가 발생되며, 본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단차의 높이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 단위세대의 커튼박스의 길이와 깊이는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 단위세대 냉방 배관의 유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락에서는 그 소음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4. 단위세대 화장실 오배수관은 층상배관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25. 주방가구, 드레스룸장,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26. 강마루 및 벽타일 등은 실제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7.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28. 엘리베이터 홀의 기준층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기준과 상이합니다.
29. 천정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1. 오피스텔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32. 세대에는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쿡탑(2구)이 설치되며, 세대 내부에는 도시가스시설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33. 세대에는 빌트인 세탁기(9k)가 기본 설치되며, 별도의 건조기능이 없으니 제품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4. 세대에는 빌트인 냉장냉동고가 기본 설치되며, 별도의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공간이 없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 기본 설치되는 가전제품이 단종될 경우, 동등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6. 오피스텔 주방 및 욕실은 공동배기 방식이 적용됩니다.
37. 오피스텔과 인접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타입은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8. 오피스텔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 및 소방용 감지기가 설치됩니다.(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 및 소방용 감지기는 견본주택용이며, 본공사시는 소방 법규에 맞춰 설치됨.)
39. 세대 난방은 지역열원을 사용하며 바닥난방이 적용됩니다. (다락은 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0. 단위세대의 욕실(기구하부, 샤워부스 제외)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침실에서 통합제어됩니다.
41. 가구 하부에는 일부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견본주택의 유니트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견본주택용 에어컨이며, 본공사시에는 지역열원을 사용하는 냉방전용 팬코일 유니트가 기본 설치됩니다. (팬코일 유니트의 제조사는 본공사시 결정됩니다.)
43. 냉방전용 팬코일 유니트가 각 실의 천정에 기본 설치되므로,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팬코일 유니트 측면에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방은 월패드 제어가 불가하고, 무선리모콘이 실내기당 1개씩 지급되며, 유선리모콘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44. 세대환기시스템은 무덕트형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적용되며, 전열교환기가 거실 천정면에 노출 설치되고, 외벽에 급배기구가 설치됩니다.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열교환기는 유선 리모콘이 지급됩니다.)
45. 세대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46. 주방가구 상부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47. 단위세대의 온수분배기는 주방 싱크 하부장에 설치되며, 싱크 하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8. 당 현장은 녹색인증 현장으로 물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세대 수압을 2.5kg/cm2 으로 제한되므로 수압이 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49.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0.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1.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넷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침실, 다용도실등 문 뒤벽, 현관벽, 복층세대 계단참등 노출된 부위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될 예정됩니다.
53. 견본주택 단위세대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실 옵션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 및 스위치, 콘센트의 설치위치, 설치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54.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합니다.
55. 음성제어기능은 SKT의 AI스피커(Nugu)에 한해서만 연동됩니다.
56.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세대 내 Wifi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7. 견본주택 및 홍보물등에 명시한 IoT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8.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 됩니다.(거실 설치예정)
59. 후드 상부에는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0. 견본주택 및 홍보물등에 명시한 IoT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1.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거실 설치예정)
62. 소방법에 의해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3. 다락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벽에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64. 같은 타입이라도 창문 위치 및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1. 분양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2. 분양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 마감재내역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분양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분양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판매시설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1-104-0000300호	₩6,835,55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상기 보증금액은 내정가 기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내정가를 초과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상세내용은 공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집합건물 관리규약 안내

> ○ 제00조 관리단, 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인은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 · 관리) 규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집합건축물을 유지 · 관리한다.
> ① 구분소유자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위반 행위(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와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증축, 물건 적치 등) 불법 광고행위 등의 건축법 및 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관리인은 본 건물에 대한 건축법 등의 위반 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뒤, 그 점검결과와 조치계획을 관리단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관리인과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관리단, 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인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법 위반 행위 예방 및 관계 업무에 협조한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 아시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 록 업 자 : 금호산업(주), 신동아건설(주), ㈜에이치엠지파트너스
- 등 록 번 호 : 아래 사업관계자 표 기재

■ 사업관계자 명칭

구 분	회 사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시행사	금호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110111-0134877	104-81-31309
	신동아건설(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층 901호(보정동, 하이프라자)	110111-0222218	106-81-33808
	(주)에이치엠지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35, 7층(논현동, 동양애니메이션빌딩)	110111-5586750	261-81-22461
시공사	신동아건설(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층 901호(보정동, 하이프라자)	110111-0222218	106-81-33808
분양대행사	㈜프런티어마루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35, 7층(논현동, 동양애니메이션빌딩)	110111-4563684	211-88-74639

■ 견본주택(분양사무실) 위치 및 분양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 사이버견본주택 주소 : http://www.sejongkhapt.com

■ 분양안내 : 044-862-1567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분양사무실)으로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분양사무실)에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문의 044.862.1567

시행 금호건설 신동아건설 HMG
시공 신동아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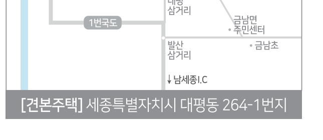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